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가상자산사업자인가? 사례 및 이슈점검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경과

2018. 1. 30.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

2018. 7. 10.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2020. 3. 24.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020. 11. 3.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2.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1. 3. 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2021. 3. 16.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3. 25.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 9. 2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도과 (신고수리 이후 AML 의무 이행)

2022. 3. 25. 가상자산사업자 Travel Rule 유예기간 도과

국내 기존 자금세탁방지제도



국내 기존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제도

-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기관의 내부보고체제 구축
 - 혐의거래보고제도(STR)
 - 고객현금거래보고제도(CTR)
 - 고객주의의무제도(CDD)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FIU 설치
 - 기록보존
- 금융실명법

사법제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자금세탁의 범죄화
 - 조직범죄(13종)
 - 경제범죄(18종)
 - 부패범죄(3종) 등
 - 은닉행위 금지, 범죄자금 몰수
- 마약거래방지법
- 테러자금금지법

국제협력

- 범죄인 인도, 국가간 사법공조
- 일반정보 및 혐의거래정보 교환
- 각국의 FIU간 협력

불법재산과 자금세탁행위 등을 근절

가상자산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 개정)

제2조(정의)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상자산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안)

제3조 (금융거래)

- ③ 법 제2조 제3호 사목에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선불카드**
 2.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및 같은 항 제8의2호에 따른 **모바일 상품권**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뒤 열거적으로 배제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 요건 x)
-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상품권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가상자산을 활용하려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 필요
- **화폐·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의 대상이 아님**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 개정)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안)

제2조 (금융회사등)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 및 보관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한 식별번호(이하 "가상자산 주소"라 한다)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이하 "가상자산이전"이라 한다)를 말한다.

◇ FATF 국제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① 영업으로, ② 고객을 대신하여, ③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작하고자 함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예시)	제외될 수 있는 범위
가상자산 거래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매수, 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u>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제한범위 포함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보고자료'로 인한 오해

- (시행령)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 참조)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

- 시행령이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음
-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대부분 지갑서비스를 영위하므로, 지갑서비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 기업용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이목 집중
 -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관한 해석 문제 (ISMS 인증 관련 다중서명 이슈)
-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 PG / 가상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할 필요 있음
- 운영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 서비스(ex.De-Fi)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능성 논란**
 - 개발자 및 거버넌스 토큰 발행자 등에게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시도 존재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ICO

- ICO관련 사업자의 VASP 해당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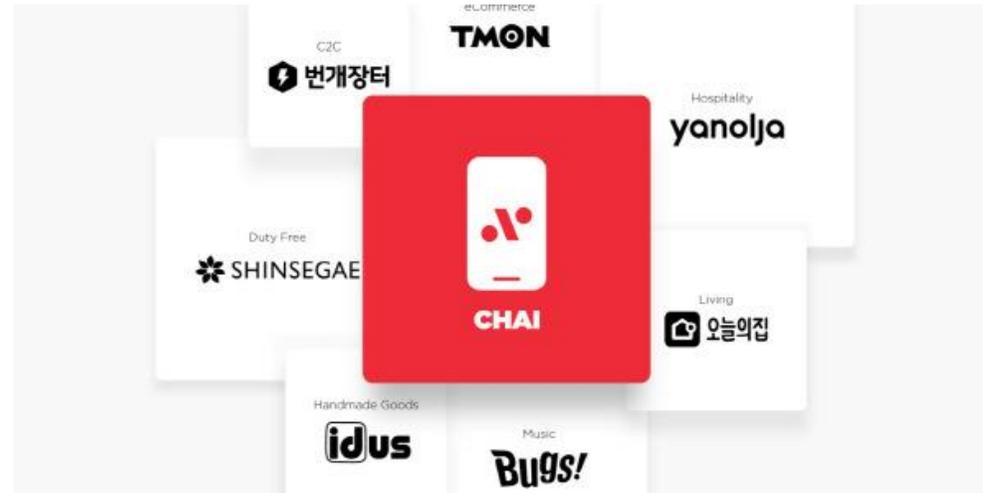
- 토큰 발행과 판매의 분리 여부
- 토큰 판매의 기간 및 횟수 (private – public / n차 sale)
- 토큰 판매의 방식 (판매 플랫폼 이용, 거래소에 유통시키는 방식)
- 토큰 분배의 방식 (플러그인방식 지갑 이용, 지갑서비스 제공하는 VASP 이용)
- 다중서명방식 이용시(ISMS 인증), 키 보관 및 관리 여부
- 토큰 판매 이후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의 운영 여부

영업성

각 호 해당

Ex) 차이페이와 테라

- 테라(Tera)는 IMF의 특별인출권(SDR)등 여러 법정화폐에 페킹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
- 차이코퍼레이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Chai와 연동하여 거래에 사용중



- 결제를 위해 Tera를 보유할 필요는 없으나, Chai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 블록체인 이용하여 결제비용 절감
- 차이코퍼레이션은 가상자산사업자인가?

Ex) 다날핀테크의 페이코인(PCI) 결제서비스

- 페이코인(PCI: Pay Coin)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세븐일레븐이나 달콤커피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결제나 신용카드결제 대신 페이코인 앱을 이용하여 PCI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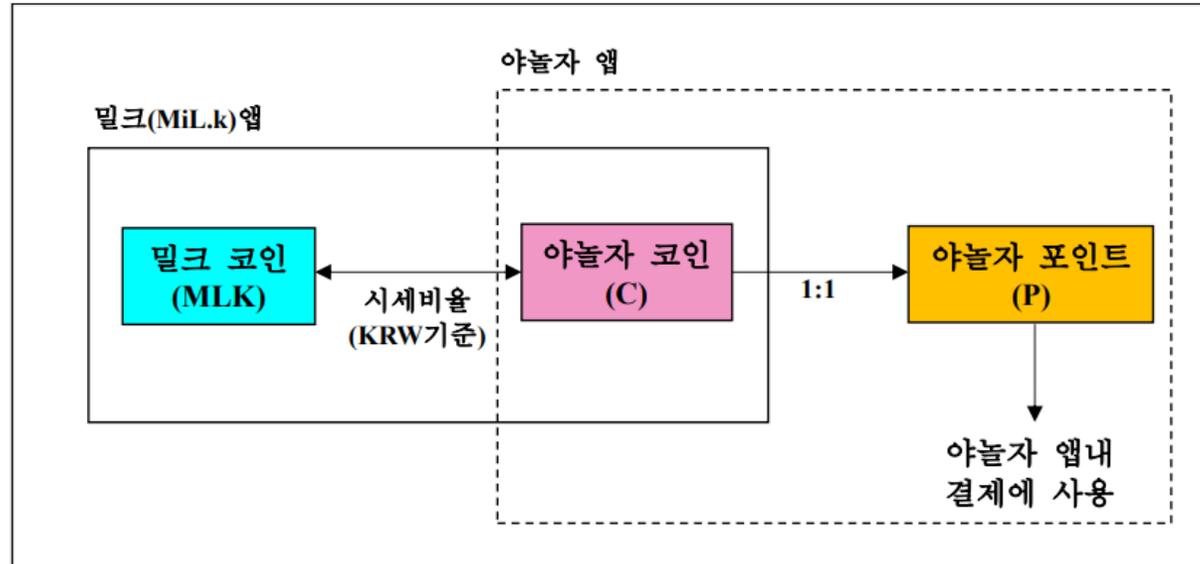
- PCI 발행 법인 및 페이코인 앱(PayProtocol Wallet) 운영은 PayProtocol AG(스위스 법인)
- (주)다날은 대가정산업무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Ex) 다날핀테크의 페이코인(PCI) 결제서비스



- ① 이용자가 결제를 원하는 경우 페이코인 앱에 결제 요청을 하면 결제에 관한 트랜잭션의 인증 정보가 QR코드 내지 바코드로 생성
- ② 세븐일레븐의 POS기가 바코드를 인식하는 시점 또는 PCI 사용수량을 입력하고 '사용하기'를 누르는 시점에, 이용자와 가맹점간 거래 목적물의 대가인 원화에 상당하는 이용자 보유 PCI를 (주)다날에서 PayProtocol Wallet을 통해 매수
- ③ 바코드 인식에 성공하면 이용자는 물건을 구매
- ④ (주)다날은 PCI 매매대가인 원화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이용자가 기 동의한 전자금융거래약관에 따라 가맹점으로 직접 지급하여 결제 정산

Ex) 야놀자와 MiL.k



- 야놀자코인은 야놀자가 발행한 포인트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지 않음
- 야놀자 코인을 야놀자 앱 내에서 밀크코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 밀크코인으로 야놀자 앱 내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1조(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④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수취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송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송신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STR(의심거래보고제도) 의무 이행을 위해 송신 가상자산사업자는 송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핀테크 업계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CI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 리스크 부담 & KoFIU에서 필요시 의무이행 검사 실시 가능성

Cf. 전자금융업자의 STR 의무 이행방식 - CI 수집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2조의2(실지명의를 관한 사항)

- ②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Cf. 전자금융업자의 STR 의무 이행 면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의 범위)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 의무의 적용범위 등)

-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안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하여 가상자산거래를 금지
4.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5.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 **상기 의무 위반시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처분 가능**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3조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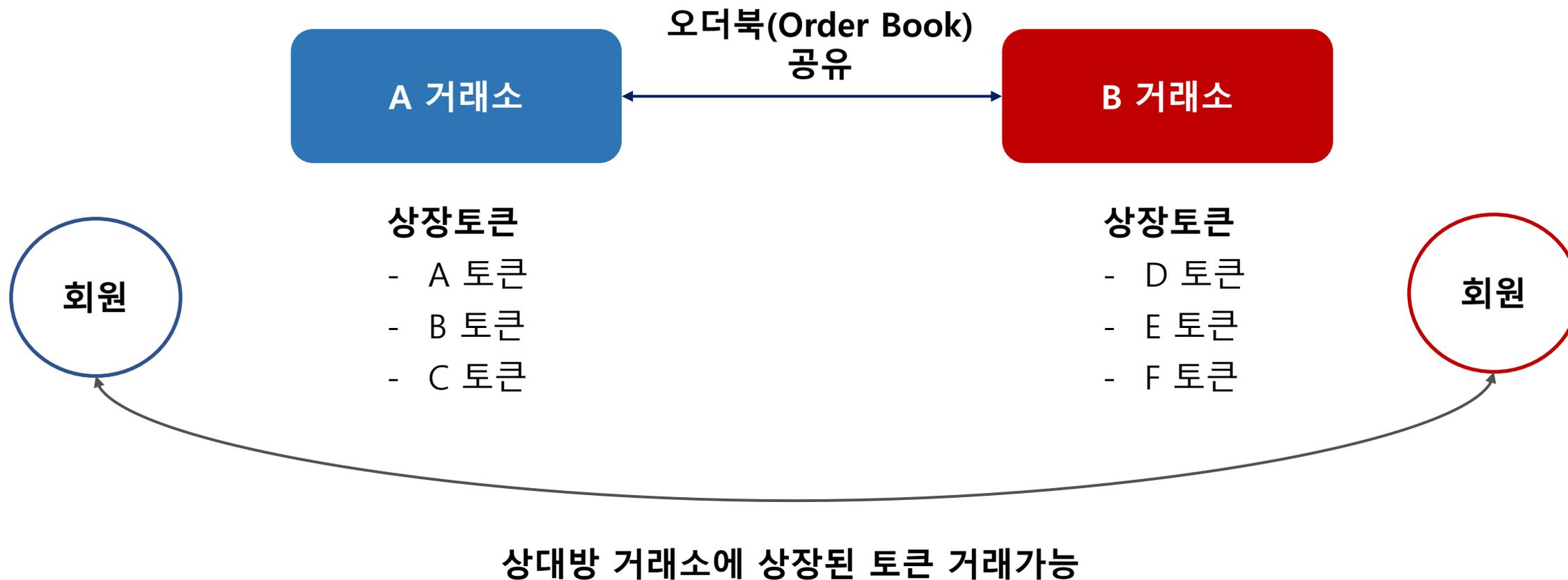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제한적인 오더북공유 허용**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Dark Coin 거래금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 - 오더북 공유 제한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마련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26조(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환산하는 방식"이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 또는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송신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한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 ② 영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송신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수취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
 - 거래소마다 가액이 상이한 문제 발생
 - **원화를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는?**
 - 거래소 API 연동 등 구심점 발생 가능성 (Xangle?)
 - 회계투명성 재고 가능성
 - 재고자산(판매목적), 무형자산(그외 목적)

4.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가상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적용한 주요 가상자산의 단위당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비트코인(BTC)	8,343,000	4,265,000
이더리움(ETH)	151,700	154,200
대쉬(DASH)	48,860	90,050
라이트코인(LTC)	48,960	34,830
이더리움클래식(ETC)	5,295	5,830
리플(XRP)	222	401
비트코인캐시(BCH)	243,700	176,800
모네로(XMR)	52,700	52,850
제트캐시(ZEC)	32,550	65,300
퀀텀(QTUM)	1,868	2,529
비트코인골드(BTG)	6,285	14,300
이오스(EOS)	3,018	2,939

출처: 빗썸코리아 감사보고서(2020. 4.)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향후 발생 가능 이슈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기존 금융기관 vs 가상자산 기반 기업**간의 다툼 예상
-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결제, 소액해외송금 등의 영역**에서는 **핀테크 기업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하여 컨소시엄 구축 예상
-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통방식의 투자 가능성** 상승
 -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ICO를 둘러싼 규제의 모호성은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
- 외국환거래법 관련 이슈 및 업권법 제정 등의 이슈는 꾸준히 제기중

www.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 동 환

02 2051 1870

010 9090 6691

dhk@dlightlaw.com